

전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나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나40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단505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AZ (개명 전 성명 :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용

변론 종결 2020. 7. 15.

판결 선고 2020. 8. 1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2. 6. 선고 2018가단505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 제6, 7,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인도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 제7,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5면 제14행의 "P의 창씨개명한 이름인 'N' 또는 그 오기인"을 "P의 창씨개명한 이름인 BA의

오기인 'N' 또는"으로 고치고,

② 제8면 제13행의 "N이 P의 창씨개명한 이름인 사실"을 "N이 P의 창씨개명한 이름인 BA의 오기인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